

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0. 6. 9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0. 5. 28.
- 회부일자: 2020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6. 9.)

2. 개정이유

-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. 9. 28.에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- 조례의 조항 신설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,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명칭 변경
(안 제1조~제9조, 제13조, 제15조 및 제16조)
- 나.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다.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지난 2018년 9월, 정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을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한 바 있음.
- 동 의안은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위 상위법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)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달서구 조례 각 조문(자구 포함) 역시 개정되어야 하는 바, 이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.
-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현행 조례 조문 중,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또는 “분석평가”로 표기된 자구(字句)를 모두 “성별영향평가”로 개정하였으며, 그 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신설(안 제7조)하는 한편, 현 성별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(안 제12조)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(취지)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고 있는 바, 특별히 논란이 될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6. 토론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